

#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

의안 번호	20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11.
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평창군의회 심의, 확정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5,15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4,83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,

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,025백만원이 증액된 161,680백만원, 특별회계가 20,805백만원이 증액되어 43,479백만원 임.

### 나. 세입예산은

일반회계가 지방세 12,064백만원, 세외수입 11,407백만원, 지방교부세 92,874백만원, 재정보전금 3,000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42,335백만원이며,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4,368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29,111백만원임.

### 다. 세출예산은

일반회계가 경상예산 46,491백만원, 사업예산 104,456백만원, 채무상환 477백만원, 예비비등 기타 10,256백만원이며,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3,082백만원, 사업예산 38,197백만원, 채무상환 2,200백만원 임.

# 관계법령발췌서

## □ 지방자치법 제118조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년도개시 50일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5일전까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재정법 제30조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·융자사업(이하"투·융자사업"이라 한다)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·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.

#### □ 지방재정법 제31조

- ① 예산은 예산총칙, 세입·세출예산, 계속비,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.
-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·세출예산, 계속비,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,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
#### □ 지방재정법 제32조

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·관·항으로 구분한다.

# 예 산 총 규 모

2006년 【본예산】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
총 계	205,158,943	170,328,699	34,830,244
일 반 회 계	161,680,116	147,655,304	14,024,812
특 별 회 계	43,478,827	22,673,395	20,805,432
상 수 도 공 기 업 특 별 회 계	7,467,370	9,011,738	△1,544,368
기 타 특 별 회 계	36,011,457	13,661,657	22,349,800
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	547,001	1,027,562	△480,561
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특 별 회 계	0	40,130	△40,130
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	394,991	359,500	35,491
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 특 별 회 계	444,228	444,228	0
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	31,563,299	11,790,237	19,773,062
공 유 재 산 관 리 특 별 회 계	3,061,938	0	3,061,938



# 제 입 · 세 출 예 산 총 관 표

【세 세 항 별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합				계				일 반 회 계				특 별 회 계			
	예 산 액	구성 비율 %	전 년 도 예 산 액	구성 비율 %	증△감	예 산 액	구성 비율 %	전 년 도 예 산 액	구성 비율 %	증△감	예 산 액	구성 비율 %	전 년 도 예 산 액	구성 비율 %	증△감	
계	205,158,943	100	170,328,699	100	34,830,244	161,680,116	100	147,655,304	100	14,024,812	43,478,827	100	22,673,395	100	20,805,432	
경 상 예 산	49,572,546	24	46,737,944	27	2,834,602	46,490,847	29	43,606,896	30	2,883,951	3,081,699	7	3,131,048	14	△49,349	
	인 간 비	28,139,037	14	26,917,186	16	1,221,851	25,811,705	16	24,383,284	17	1,428,421	2,327,332	5	2,533,902	11	△206,570
경 상 적 경 비	21,433,509	10	19,820,758	16	1,612,751	20,679,142	13	19,223,612	13	1,455,530	754,367	2	597,146	3	157,221	
	사 업 예 산	142,653,256	70	105,907,780	62	36,745,478	104,456,302	65	89,121,488	60	15,334,814	38,196,956	88	16,786,292	74	21,410,664
보 조 사 업	91,729,537	45	63,009,306	37	28,720,231	60,530,970	37	51,536,262	35	8,994,708	31,198,567	72	11,473,044	51	19,725,523	
	자 체 사 업	50,923,721	25	42,898,474	25	8,025,247	43,925,332	27	37,585,226	25	6,340,106	6,998,389	16	5,313,248	23	1,685,141
채 무 상 환	2,677,247	1	6,398,024	4	△3,720,777	477,075	0	3,642,269	2	△3,165,194	2,200,172	5	2,755,755	12	△555,583	
	지방채상환	2,677,247	1	3,245,723	2	△568,476	477,075	0	489,968	0	△12,893	2,200,172	5	2,755,755	12	△555,583
채 무 부 담 행 위 상 환	0	0	3,152,301	2	△3,152,301	0	0	3,152,301	2	△3,152,301	0	0	0	0	0	
	예 비 비 등	10,255,892	5	11,284,951	7	△1,029,059	10,255,892	6	11,284,951	8	△1,028,759	0	0	0	△300	
예 비 비	1,622,219	1	3,187,008	2	△1,564,789	1,622,219	1	3,187,008	2	△1,564,789	0	0	0	0	0	
	기 타	8,633,673	4	8,097,943	5	535,730	8,633,673	5	8,097,643	5	536,030	0	300	0	△300	